

---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

2025. 1.

양형위원회

---

##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함
- 연혁
  - 2011. 3. 21. 설정, 2011. 7. 1. 시행
  - 그 후 수정은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등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정비(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수정 배경
  - 사기범죄의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반영 필요성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그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 및 법정형 상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 5. 16. 개정, 2023. 11. 17.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 포함됨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으로 상향됨(제15조의2)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의 제정 및 보험사기 증가
    - 2016. 3. 29. 제정, 2016. 9. 30. 시행되면서,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으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미설정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수임
    - 보험사기 발생 횟수 및 피해금이 증가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짐

#### ■ 수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4. 4. 29. 제13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4. 8. 12. 제133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2024. 9. 30. 제134차 및 2024. 11. 1. 제13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 추가 심의

- 
- 2025. 1. 13. 제136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 2025. 1. ~ 2025.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5. 2. 17.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5.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이하 여백)

## II.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 1. 고려 사항

-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대상을 결정함
- ▣ 다만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에 포함함

### 2. 설정 범위

#### 가. 개요

- ▣ 기존 설정 범죄에 더하여, 다음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공갈 제외)를 행한 자/정의 (제2조 제2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
	제15조의2 제3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9조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	형 1/2 가중
	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병과 가능)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 때(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병과 가능)	

---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제15조의2 제1항), 상습전  
기통신금융사기(제15조의2 제3항)

- 동 조항이 ‘대면편취’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일반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검찰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동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번 설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으나, 사기와 공갈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다르고,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행위유형에서 공갈에 의한 범행은 제외함

다.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제8조 제1항 제1호), 상습보험사기(제9조), 가중처벌(제11조 제1항)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당시 조직적 사기에 보험사기가 포함되어 설정되었는데도,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위 규정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후 2016. 9. 30.부터 시행되어 현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보험사기 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현재 보험사기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설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 Ⅲ.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 2. 유형 분류안

##### 가. 논의의 전제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 나. 유형 분류안 설명

- ▣ 현행 유형 분류의 설정 연혁 ⇨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는 현재에도 유효함
- 대유형 분류
  -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대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최초 검토단계에서 일반사기와 특수사기로 나누되 특수사기에 전화금융 사기와 보험금 사기를 설정하여 별도의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정하는 것으로 논의됨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려에서 조직적 사기를 특수한 유형의 사기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기범죄를 일반사기로 규율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 전화금융 사기와 보험금 사기의 소유형 분류를 조직가담 정도와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범죄에서 일반사기의 형량범위가 오히려 높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 다양한 사기유형 중에서 전화금융 사기와 보험금 사기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 소유형 분류

-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시행 중이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 원, 5억 원, 50억 원, 300억 원을 경계로 하여 5가지 소유형을 분류하였고, 대표적 재산범죄인 사기범죄도 재산범죄인 횡령·배임범죄와 동일하게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였음
- 사기범죄의 형태와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지나치게 세분류하게 되면 이득액이 같더라도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구체적인 형의 양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상습전기통신금융사기의 별도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

- 전기통신금융사기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행위태양의 본질이 동일함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기범죄에는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외의 피해액이 보다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가

---

많음. 예컨대, 이른바 라인 사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건 등

-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됨으로써 가중된 형량 범위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달리 설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 보험사기, 상습보험사기 및 가중처벌의 별도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죄와 행위태양의 본질이 동일함
- 일반 사기와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의 별도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

- 일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행위태양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음
- 이득액의 합계가 동일함에도 단지 피해자 1인에 대한 이득액 합계가 크다는 이유 또는 포괄일죄가 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독립적인 대유형을 신설할 만큼의 규범적·현실적 필요성이 크지 않음. 사기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거나, 특별가중인자의 신설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함
- 특정경제범죄법에서 가중하고 있는 공갈죄, 횡령·배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하고 있는 뇌물죄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한 형태로 하나의 양형기준표를 사용하면서 형량범위가 달라지도록 설정되어 있음

- ▣ 법정형,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를 유지하기로 함

##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	300억 원 이상			

##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5	300억 원 이상			

(이하 여백)

---

## IV. 사기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 1. 고려사항

####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2. 일반사기(대유형 1)

#### 가. 유형의 정의

####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이하 여백)

## 나. 형량 분포 등

### ▣ 연도별 평균형량 추이(단일범 및 동종경합범)<sup>1)</sup>

단위: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일반 사기	제1유형	감경	2,020	6.2	1,993	6.3	1,803	6.4	1,809	6.4	1,415	6.5
		기본	3,516	7.3	3,772	7.3	3,533	7.6	3,173	7.6	2,637	7.8
		가중	1,032	12.7	1,156	13.1	1,107	13.4	1,066	14.1	923	14.4
		<b>합계</b>	<b>6,568</b>	<b>7.8</b>	<b>6,921</b>	<b>8.0</b>	<b>6,443</b>	<b>8.3</b>	<b>6,048</b>	<b>8.4</b>	<b>4,975</b>	<b>8.6</b>
	제2유형	감경	745	11.8	720	11.8	682	12.0	824	12.3	595	12.8
		기본	1,269	15.5	1,333	15.8	1,310	16.4	1,310	16.2	1,086	16.6
		가중	252	25.6	261	26.7	278	29.4	326	28.1	240	29.9
		<b>합계</b>	<b>2,266</b>	<b>15.4</b>	<b>2,314</b>	<b>15.8</b>	<b>2,270</b>	<b>16.7</b>	<b>2,460</b>	<b>16.5</b>	<b>1,921</b>	<b>17.1</b>
	제3유형	감경	197	22.2	166	23.0	139	23.8	179	23.4	170	22.7
		기본	272	33.6	244	35.9	283	33.7	254	35.9	268	36.1
		가중	117	47.0	132	49.3	159	50.9	118	48.8	139	51.2
		<b>합계</b>	<b>586</b>	<b>32.4</b>	<b>542</b>	<b>35.2</b>	<b>581</b>	<b>36.0</b>	<b>551</b>	<b>34.6</b>	<b>577</b>	<b>35.8</b>
	제4유형	감경	8	30.0	13	29.5	10	29.2	12	32.8	15	37.2
		기본	22	41.5	8	46.3	21	40.2	10	47.4	8	60.0
		가중	20	70.2	18	81.0	15	67.2	19	71.1	14	76.3
		<b>합계</b>	<b>50</b>	<b>51.1</b>	<b>39</b>	<b>56.7</b>	<b>46</b>	<b>46.6</b>	<b>41</b>	<b>54.1</b>	<b>37</b>	<b>56.9</b>
	제5유형	감경	3	80.0	-	-	-	-	-	-	1	36.0
		기본	2	60.0	-	-	1	84.0	-	-	-	-
		가중	-	-	-	-	1	90.0	-	-	1	48.0
		<b>합계</b>	<b>5</b>	<b>72.0</b>	<b>-</b>	<b>-</b>	<b>2</b>	<b>87.0</b>	<b>-</b>	<b>-</b>	<b>2</b>	<b>42.0</b>
전체	감경	2,973	8.8	2,892	8.7	2,634	8.9	2,824	9.3	2,196	9.7	
	기본	5,081	10.9	5,357	10.8	5,148	11.4	4,747	11.6	3,999	12.2	
	가중	1,421	18.6	1,567	19.2	1,560	20.7	1,529	20.5	1,317	21.8	
	<b>합계</b>	<b>9,475</b>	<b>11.4</b>	<b>9,816</b>	<b>11.5</b>	<b>9,342</b>	<b>12.3</b>	<b>9,100</b>	<b>12.4</b>	<b>7,512</b>	<b>13.1</b>	

1)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 451쪽.

▣ 일반사기 형량 분포(단일범, 동종경합범 및 이종경합범 전체)<sup>2)</sup>

- 권고 형량범위(감경·기본·가중영역 포함)는 아래 표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제1유형	수	5	51	93	663	92	1,937	10	1,081	16	723	963	-	135	10	82	1	361	
	비율	0.1	0.8	1.4	9.9	1.4	28.9	0.1	16.2	0.2	10.8	14.4	-	2.0	0.1	1.2	0.0	5.4	
제2유형	수	-	-	1	13	2	95	2	131	5	233	616	1	115	10	64	1	388	
	비율	-	-	0.0	0.5	0.1	3.8	0.1	5.3	0.2	9.4	24.9	0.0	4.7	0.4	2.6	0.0	15.7	
제3유형	수	-	-	-	1	-	10	-	3	-	4	27	-	2	1	2	-	97	
	비율	-	-	-	0.1	-	1.2	-	0.4	-	0.5	3.2	-	0.2	0.1	0.2	-	11.4	
제4유형	수	-	-	-	-	-	-	-	1	-	3	2	-	-	-	-	-	2	
	비율	-	-	-	-	-	-	-	1.2	-	3.5	2.3	-	-	-	-	-	2.3	
제5유형	수	-	-	-	-	-	-	-	-	-	-	1	-	-	-	-	-	2	
	비율	-	-	-	-	-	-	-	-	-	-	10.0	-	-	-	-	-	20.0	
전체	수	5	51	94	677	94	2,042	12	1,216	21	963	1,609	1	252	21	148	2	850	
	비율	0.0	0.5	0.9	6.7	0.9	20.2	0.1	12.0	0.2	9.5	15.9	0.0	2.5	0.2	1.5	0.0	8.4	

유형		형량(월)																	
		19	20	21	22	24	26	27	28	30	32	34	36	38	42	48	51	52	
제1유형	수	1	19	1	14	242	10	2	8	76	2	-	57	1	19	9	-	-	
	비율	0.0	0.3	0.0	0.2	3.6	0.1	0.0	0.1	1.1	0.0	-	0.9	0.0	0.3	0.1	-	-	
제2유형	수	1	39	1	23	326	6	2	5	144	3	2	147	-	37	29	-	-	
	비율	0.0	1.6	0.0	0.9	13.2	0.2	0.1	0.2	5.8	0.1	0.1	6.0	-	1.5	1.2	-	-	
제3유형	수	-	3	-	3	135	-	-	6	78	1	1	155	-	50	114	1	1	
	비율	-	0.4	-	0.4	15.8	-	-	0.7	9.2	0.1	0.1	18.2	-	5.9	13.4	0.1	0.1	
제4유형	수	-	-	-	-	1	-	-	-	8	-	-	17	-	2	7	-	-	
	비율	-	-	-	-	1.2	-	-	-	9.3	-	-	19.8	-	2.3	8.1	-	-	
제5유형	수	-	-	-	-	1	-	-	-	1	-	-	1	-	-	3	-	-	
	비율	-	-	-	-	10.0	-	-	-	10.0	-	-	10.0	-	-	30.0	-	-	
전체	수	2	61	2	40	705	16	4	19	307	6	3	377	1	108	162	1	1	
	비율	0.0	0.6	0.0	0.4	7.0	0.2	0.0	0.2	3.0	0.1	0.0	3.7	0.0	1.1	1.6	0.0	0.0	

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 452~454쪽.

유형		형량(월)															전체	
		54	60	62	65	66	72	78	84	96	108	120	132	144	156	162		180
제1유형	수	2	6	-	-	-	1	-	-	-	-	-	-	-	-	-	-	6,693
	비율	0.0	0.1	-	-	-	0.0	-	-	-	-	-	-	-	-	-	-	100.0
제2유형	수	6	15	-	-	-	6	-	-	-	1	-	-	-	-	-	-	2,470
	비율	0.2	0.6	-	-	-	0.2	-	-	-	0.0	-	-	-	-	-	-	100.0
제3유형	수	18	71	1	1	3	36	1	14	5	5	-	-	-	2	-	-	852
	비율	2.1	8.3	0.1	0.1	0.4	4.2	0.1	1.6	0.6	0.6	-	-	-	0.2	-	-	100.0
제4유형	수	2	11	-	-	-	10	-	4	5	4	3	1	1	-	1	1	86
	비율	2.3	12.8	-	-	-	11.6	-	4.7	5.8	4.7	3.5	1.2	1.2	-	1.2	1.2	100.0
제5유형	수	-	-	-	-	-	-	-	-	1	-	-	-	-	-	-	-	10
	비율	-	-	-	-	-	-	-	-	10.0	-	-	-	-	-	-	-	100.0
전체	수	28	103	1	1	3	53	1	18	11	10	3	1	1	2	1	1	10,111
	비율	0.3	1.0	0.0	0.0	0.0	0.5	0.0	0.2	0.1	0.1	0.0	0.0	0.0	0.0	0.0	0.0	100.0

####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9년	6년 - 9년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11년	8년 - 13년 17년

▣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소유형 1, 2 ⇨ 현행 유지

- 기존사건 적용: 전체 사건 대부분이 권고 형량범위 안에 대체로 분포하고, 최빈값(소유형 1: 6개월, 소유형 2: 12개월), 평균형량(소유형 1: 9.85개월, 소유형 2: 18.32개월) 모두 기본 영역 내에 위치함
- 신설사건 편입: 판결문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도 대체로 권고 형량범위 안에 고르게 분포하고, 보이스포싱은 대부분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례의 축적을 기다릴 필요도 있음

● **소유형 3 ⇨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최빈값(36개월), 평균형량(37.8개월)이 모두 기본영역 내에 위치하고 하한에 근접하는 모습임
- 평균형량이 2018년 32.4개월에서 2022년 35.8개월로 다소 증가하였고, 법정형이 동일한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5년 - 9년), 소유형 4, 5와의 관계 및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함

● **소유형 4 ⇨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최빈값(36개월), 평균형량(59.4개월)이 모두 감경영역 내에 위치함
- 특정경제범죄법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공갈범죄 등 법정형이 5년 이상인 범죄 중 소유형 4보다 가중영역 상한을 높게 설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이 상당수 존재함

일반공갈범죄 양형기준 중 소유형 4, 5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법정형 3년 이상)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법정형 5년 이상, 무기)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 
- 평균형량이 2018년 51.1개월에서 2022년 56.9개월로 증가 추세에 있는 한편, 소유형 3, 5와의 관계 및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

- **소유형 5 ⇨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최빈값(48개월), 평균형량(37.8개월)이 감경영역 하한을 이탈함
- 소유형 4의 사건 중에는 소유형 5의 가중영역 상한 13년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례가 나타나고, 향후 소유형 5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충분히 예상됨
-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하여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 3. 조직적 사기(대유형 2)

#### 가. 유형의 정의

#####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 조직적 사기 정의규정의 ‘전화금융사기’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수정함
- 정의규정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하 여백)

## 나. 형량 분포 등

### ▣ 사기범죄 연도별 평균형량 추이(단일범 및 동종경합범)<sup>3)</sup>

단위: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감경	302	13.0	243	13.3	324	14.1	788	13.2	1,036	12.3
		기본	296	18.1	246	19.5	332	19.7	353	20.0	351	17.3
		가중	79	23.3	56	28.1	59	28.5	74	31.0	49	27.8
		합계	<b>677</b>	<b>16.4</b>	<b>545</b>	<b>17.6</b>	<b>715</b>	<b>17.9</b>	<b>1,215</b>	<b>16.3</b>	<b>1,436</b>	<b>14.0</b>
	제2유형	감경	49	17.8	59	16.1	60	19.5	233	19.3	244	18.4
		기본	94	24.8	117	22.4	188	26.0	328	26.6	306	26.3
		가중	75	32.0	48	34.3	54	36.0	67	42.4	51	40.0
		합계	<b>218</b>	<b>25.7</b>	<b>224</b>	<b>23.3</b>	<b>302</b>	<b>26.5</b>	<b>628</b>	<b>25.6</b>	<b>601</b>	<b>24.2</b>
	제3유형	감경	35	19.8	25	20.2	8	24.5	37	22.4	39	26.5
		기본	15	28.9	33	30.1	25	31.7	49	33.1	52	40.0
		가중	32	39.9	10	49.1	18	51.3	40	59.1	29	58.1
		합계	<b>82</b>	<b>29.3</b>	<b>68</b>	<b>29.3</b>	<b>51</b>	<b>37.5</b>	<b>126</b>	<b>38.2</b>	<b>120</b>	<b>40.0</b>
	제4유형	감경	37	19.2	4	27.0	-	-	-	-	14	30.6
		기본	-	-	7	41.1	8	47.5	2	39.0	9	47.1
		가중	-	-	9	46.0	3	60.0	7	114.0	6	61.3
		합계	<b>37</b>	<b>19.2</b>	<b>20</b>	<b>40.5</b>	<b>11</b>	<b>50.9</b>	<b>9</b>	<b>97.3</b>	<b>29</b>	<b>42.1</b>
	제5유형	감경	-	-	-	-	-	-	-	-	4	34.5
		기본	1	60.0	1	42.0	-	-	1	30.0	4	54.0
		가중	2	114.0	1	144.0	-	-	-	-	-	-
		합계	<b>3</b>	<b>96.0</b>	<b>2</b>	<b>93.0</b>	<b>-</b>	<b>-</b>	<b>1</b>	<b>30.0</b>	<b>8</b>	<b>44.3</b>
전체	감경	423	14.6	331	14.5	392	15.2	1,058	14.9	1,337	14.1	
	기본	406	20.2	404	21.6	553	22.8	733	23.9	722	23.3	
	가중	188	30.6	124	34.4	134	35.3	188	44.1	135	40.4	
	합계	<b>1,017</b>	<b>19.8</b>	<b>859</b>	<b>20.7</b>	<b>1,079</b>	<b>21.6</b>	<b>1,979</b>	<b>21.0</b>	<b>2,194</b>	<b>18.7</b>	

(이하 여백)

3)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 451~452쪽.

▣ 조직적 사기 형량 분포(단일범, 동종경합범 및 이종경합범 전체)<sup>4)</sup>

- 권고 형량범위(감경·기본·가중영역 포함)는 아래 표에 회색 음영으로 표시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6
제1유형	수	1	3	7	29	2	189	1	219	4	203	703	127	10	91	547	30	-	20	271	4
	비율	0.0	0.1	0.3	1.1	0.1	7.0	0.0	8.1	0.1	7.5	26.1	4.7	0.4	3.4	20.3	1.1	-	0.7	10.0	0.1
제2유형	수	-	-	-	-	-	1	-	5	-	15	120	38	6	40	296	36	2	22	333	5
	비율	-	-	-	-	-	0.1	-	0.3	-	1.0	8.2	2.6	0.4	2.7	20.2	2.5	0.1	1.5	22.8	0.3
제3유형	수	-	-	-	-	-	-	-	-	-	-	5	3	-	5	24	3	-	1	28	1
	비율	-	-	-	-	-	-	-	-	-	-	1.9	1.2	-	1.9	9.3	1.2	-	0.4	10.9	0.4
제4유형	수	-	-	-	-	-	-	-	-	-	-	1	-	-	-	3	-	-	-	6	-
	비율	-	-	-	-	-	-	-	-	-	-	2.3	-	-	-	6.8	-	-	-	13.6	-
제5유형	수	-	-	-	-	-	-	-	-	-	-	-	-	-	-	-	-	-	-	3	-
	비율	-	-	-	-	-	-	-	-	-	-	-	-	-	-	-	-	-	-	6.3	-
전체	수	1	3	7	29	2	190	1	224	4	218	829	168	16	136	870	69	2	43	641	10
	비율	0.0	0.1	0.2	0.6	0.0	4.2	0.0	5.0	0.1	4.8	18.4	3.7	0.4	3.0	19.3	1.5	0.0	1.0	14.2	0.2

유형		형량(월)																			
		27	28	29	30	32	33	34	36	38	40	41	42	44	45	48	50	54	56	60	66
제1유형	수	-	4	1	123	4	-	1	65	-	-	-	14	-	1	16	-	1	-	4	-
	비율	-	0.1	0.0	4.6	0.1	-	0.0	2.4	-	-	-	0.5	-	0.0	0.6	-	0.0	-	0.1	-
제2유형	수	1	31	-	213	18	2	5	150	2	1	-	43	2	-	52	1	5	-	9	-
	비율	0.1	2.1	-	14.6	1.2	0.1	0.3	10.3	0.1	0.1	-	2.9	0.1	-	3.6	0.1	0.3	-	0.6	-
제3유형	수	-	2	-	23	1	-	-	47	1	-	-	20	-	-	33	1	13	-	22	1
	비율	-	0.8	-	8.9	0.4	-	-	18.3	0.4	-	-	7.8	-	-	12.8	0.4	5.1	-	8.6	0.4
제4유형	수	-	-	-	2	-	-	-	6	-	-	1	2	1	-	3	1	3	2	6	-
	비율	-	-	-	4.5	-	-	-	13.6	-	-	2.3	4.5	2.3	-	6.8	2.3	6.8	4.5	13.6	-
제5유형	수	-	-	-	1	-	-	-	14	-	-	-	-	-	-	3	-	-	-	-	-
	비율	-	-	-	2.1	-	-	-	29.2	-	-	-	-	-	-	6.3	-	-	-	-	-
전체	수	1	37	1	362	23	2	6	282	3	1	1	79	3	1	107	3	22	2	41	1
	비율	0.0	0.8	0.0	8.0	0.5	0.0	0.1	6.3	0.1	0.0	0.0	1.8	0.1	0.0	2.4	0.1	0.5	0.0	0.9	0.0

4)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2년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I」, 473~474쪽.

유형		형량(월)																		전체
		72	80	84	87	90	96	108	112	114	120	132	144	156	168	180	192	240	264	
제1유형	수	1	-	-	-	1	-	-	-	-	-	-	-	-	-	-	-	-	-	2,697
	비율	0.0	-	-	-	0.0	-	-	-	-	-	-	-	-	-	-	-	-	-	100.0
제2유형	수	6	-	2	-	-	-	-	1	-	-	-	-	-	-	-	-	-	-	1,463
	비율	0.4	-	0.1	-	-	-	-	0.1	-	-	-	-	-	-	-	-	-	-	100.0
제3유형	수	7	-	10	1	1	2	1	-	-	-	-	1	-	-	-	-	-	-	257
	비율	2.7	-	3.9	0.4	0.4	0.8	0.4	-	-	-	-	0.4	-	-	-	-	-	-	100.0
제4유형	수	1	1	1	-	-	-	-	-	1	1	-	1	-	-	1	-	-	-	44
	비율	2.3	2.3	2.3	-	-	-	-	-	2.3	2.3	-	2.3	-	-	2.3	-	-	-	100.0
제5유형	수	4	-	5	-	-	2	4	-	-	1	1	-	2	1	1	3	2	1	48
	비율	8.3	-	10.4	-	-	4.2	8.3	-	-	2.1	2.1	-	4.2	2.1	2.1	6.3	4.2	2.1	100.0
전체	수	19	1	18	1	2	4	5	1	1	2	1	2	2	1	2	3	2	1	4,509
	비율	0.4	0.0	0.4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100.0

#### 다. 검토

##### ▣ 다음과 같이 형량범위를 수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del>9년</del> 11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del>9년</del> 11년	8년 - <del>11년</del> 17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del>13년</del> 15년	11년 이상, 무기

- ▣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

● 소유형 1, 2 ⇨ 현행 유지

- 기존사건 적용: 전체 사건 대부분이 권고 형량범위 안에 대체로 분포하고, 최빈값(소유형 1: 12개월, 소유형 2: 24개월), 평균형량(소유형 1: 15.8개월, 소유형 2: 25.41개월) 모두 감경 또는 기본영역 내에 위치함
- 신설사건 편입: 판결문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의 경우 최빈값, 평균형량이 하한을 이탈하거나 감경영역에 속하는 등 형량범위가 낮게 분포되어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최빈값, 평균형량이 감경 또는 기본영역에 위치함

● 소유형 3 ⇨ 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최빈값(36개월), 평균형량(40.58개월)이 모두 감경영역 내에 위치함
- 특정경제범죄법상 법정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평균형량이 2018년 29.3개월에서 2022년 40개월로 증가하는 추세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범죄의 경우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례가 나타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폐해도 커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소유형 4, 5와의 관계 및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함

구분	사건번호	이득액	형량	비고	비고
1	서울동부지법 2023고합***	20억 원 초과	징역 15년	상고기각 확정됨	보이스피싱
2	서울동부지법 2023고합**	25억 원 초과	징역 20년	상고기각 확정됨	
3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고합***	19억 원 초과	징역 20년	상고기각 확정됨	

---

● 소유형 4 ⇨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최빈값[60개월, 36개월, 24개월(동일값)]은 감경영역에 위치하거나 감경영역 하한을 이탈하고, 평균형량(51.75개월)은 감경영역에 위치함
-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법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고, 일반공갈범죄 가중영역(7년 - 11년)과 비교해 볼 때 조직적 사기에서는 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할 필요가 있음
- 보이스포싱 관련 사건에서 가중영역의 상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실무례가 확인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유형 3, 5와의 관계 및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함

● 소유형 5 ⇨ 기본·가중영역의 상한 상향

- 최빈값(36개월)은 감경영역 하한을 이탈하고, 평균형량(89.88개월)은 감경영역에 위치하나 기본영역 하한에 근접함
- 앞서 본 바와 같은 통계 수치, 소유형 3, 4와의 관계, 상하한 사이의 적절한 간격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한을 규범적으로 상향함

---

## V. 사기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 1. 양형인자 중 수정 부분

#### 가. 특별감경인자

##### 1)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정의규정 수정

■ 정의규정에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를 삭제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묵비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사기가 성립됨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하여 그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의규정 수정

▣ 정의규정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제외함

-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특별가중인자

### 1)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정의규정 수정

#### ▣ 정의규정 중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삭제함

- 피고인의 고의적인 범행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는 피해자에게 그것이 발생한 결과 자체로서 피고인의 양형책임을 가중하는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범죄성립 요건으로서의 책임과는 구별될 수 있음
- 위 양형인자를 두고 있는 범죄군 중 공갈범죄를 제외한 횡령·배임범죄, 방화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명예훼손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모두 이를 요구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2)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정의규정 수정

▣ 정의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를 추가함

- 보험금의 산정 또는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또는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보험회사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
-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한 것으로 당해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다른 공범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지는 아니함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내부비리 고발’ → ‘내부고발’ 로 수정

- 사기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일 뿐 원래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표현을 수정하고 정의규정을 삭제함

---

## 다. 일반감경인자

### 1) 일반적 수사협조 ⇨ 신설

- 보이스포싱, 보험사기 관련 판결문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사협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음
- 특히 보험사기와 같이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수사협조를 감경인자로 반영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음
-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는 범죄군인 디지털 성범죄, 관세범죄,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등을 참고하여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함
- 정의규정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공탁 관련 양형인자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기로 함
-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을 수정
-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

---

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수정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하 여백)

## 2. 양형인자표

### 가. 일반사기(대유형 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li>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li> <li>○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del>비리</del> 고발</li> <li>○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인 경우</li> <li>○ 동종 누범</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인적 신뢰관계 이용</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나. 조직적 사기(대유형 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li>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li> <li>○ 단순 가담</li> <li>○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del>바리</del>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del>공탁 포함</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범인 경우</li> <li>○ 동종 누범</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인적 신뢰관계 이용</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b>일반적 수사협조</b></li> <li>○ 상당한 피해 회복(<del>공탁 포함</de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 VI. 사기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일반사기 유형)</li> <li>○ 미합의</li> <li>○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조직적 사기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사기 유형)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li> <li>○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li> <li>○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li> <li>○ 자수 또는 내부<del>비리</del> 고발</li> <li>○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참작 동기</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li>○ 일반적 수사 협조(조직적 사기 유형)</li> <li>○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li> </ul>